

해외증권시장 실시간 시세정보 이용약관

제정 2022.08.29

개정 2022.09.06

본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제 1 조 (목적)

이 약관은 유진투자선물(이하 “회사”라 함)에 해외선물옵션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한 고객 중 해외증권시장의 실시간 시세정보를 유료로 제공 받고자 하는 고객(이하 “고객”이라 함)과 회사간에 회사가 해외증권시장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시세정보제공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라 함)의 이용조건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서비스 내용)

회사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실시간 시세정보의 내용은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외화증권의 시가 및 종가, 고가 저가, 정산가, 매도/매수호가, 체결가, 차트 등 시세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.

제 3 조 (서비스의 이용)

-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회사의 영업점,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컴퓨터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서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고객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거나 서비스 및 데이터의 내용을 무단으로 전재, 복제, 전송,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본인의 ID, 비밀번호, 계좌번호 등 고객의 개인정보 및 기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노출하여서는 아니 되며,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4 조 (이용료)

- ①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“회사”에서 정한 서비스이용료(홈페이지 -> 고객센터-> 업무안내 -> 수수료 및 예탁금이용료)등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서비스 이용 신청 시 고객은 해당월 이용료에 대하여 서비스를 신청한 해외선물옵션매매거래계좌(이하 “신청계좌”)에 예치하여야 한다.
- ③ 고객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매월 서비스 이용료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. 이용료는 월 단위로 부과되며, 월 단위는 매월 초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한다. 이 경우 서비스 이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거래소로 전달되며, 해당 해외거래소의 이용료 과금정책에 따라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개시시점이 해당 월 1일이 아니거나 종료시점이 월말이 아닌 경우라도 서비스이용료는 1 개월로 계산하며 중도 해지 시 당월 미사용 잔여일수에 대해서는 환급되지 않는다.
- ④ 회사는 서비스이용료 징수기준을 정하고 이를 회사의 영업점,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화면, 또는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.
- ⑤ 회사가 이용료 징수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9 조(약관의 변경 등)의 절차에 따른다.

제 5 조 (저작권)

서비스와 관련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회사 및 관련 협력사에 있으며, 고객은 이를 회사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.

제 6 조 (회사의 책임)

① “회사”는 접근매체(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른 접근매체(이하 ‘접근매체라’ 함)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,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,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“고객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.

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고객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

1. “고객”이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

2. 제 3 자가 권한 없이 “고객”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“고객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

3. 회사가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 거래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 9 조제 1 항제 3 호(해킹 등)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

4. 고객이 제 3 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·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 9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

가. 누설 ·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

나.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

5. 법인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 2 조 제 2 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)인 “고객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“회사”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

③ “회사”는 “고객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 3 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“고객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.

④ “회사”는 제 1 항부터 제 3 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“고객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.

제 7 조 (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)

회사는 천재지변,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 8 조 (계약의 해지)

- ① 고객이 계약기간 중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영업점,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② “고객”이 “서비스”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 약관 제 6 조 제 2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는 경우 “회사”는 “고객”에게 14 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“고객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“고객”的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제 9 조 (약관의 변경 등)

- ① 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,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. 다만,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·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다.
-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“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-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하여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,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화면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(화면출력포함)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(분쟁조정)

회사와 고객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책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,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 11 조 (관할법원)

본 약관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 되는 경우 관할법원은 「민사소송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12 조 (관계법규등 준용)

-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,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다.
- ②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‘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약관’ 및 ‘전자금융법령’이 우선 적용된다.

부칙

이 약관은 2022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이 약관은 2022년 9월 06일부터 시행한다.